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8. 25
기획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8년 8월 18일

· 회부일자 : 1998년 8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·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(1998.8.25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규린)

가. 제안이유

'98. 2. 24일 대통령령 제15,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
규정을 각각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개정
하러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자치단체장 여비지급 기준 마련(안 제3조)
 - 도지사 : 특호 라목(차관급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)
-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
운임(국외여비 제외)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
 -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
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국외여비규정을 삭제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오건영)

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,680호로 제정공포('98. 2. 24)
되고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각각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
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자치단체장 여비 지급기준을 차관급 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으로
하였고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
에는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
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
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(안)
- 신·구조문 대비표